

##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조 (기금의 설치)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3 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4 조 (기금의 적립) ①광주직할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 및 제3조의 필요에 따라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까지 적립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융자금은 기금으로 본다.

#### 제 2 장 기금의 운용

제 5 조 (기금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조 (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정신이 강하고 자활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용자금액) 기금의 용자액은 1 세대 5,000 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 조 (신청절차) ①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용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9 조 (용자금 상환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5 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 만료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 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의 용자를 받은 자가 제1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 하여도 용자금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이 자금을 용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용자금을 상환하게 해야 한다.

1. 용자를 받은 자가 용자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할 때
2. 용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할 때

제 10 조 (심사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 3 장 회 계

제 11 조 (세입세출) ①기금의 세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의 세출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으로 한다.

제 12 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 13 조 (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14 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중 경리관·징수관·총괄채권관리관·총괄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분임징수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 15 조 (결산등) ①기금결산보고서는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서와 함께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광주직할시서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 장 보 칙

제 17 조 (감면조치) 기금을 용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 1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용자조례에 의한 용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용자한 것으로 본다.